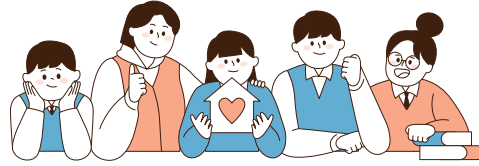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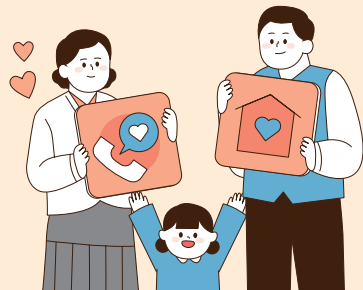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지역	기관·단체명	번호
서울	(사)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	02-356-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031-239-639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063-901-1131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523
	(사)목포YWCA	061-244-1366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01-0420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070-7725-3967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2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8개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시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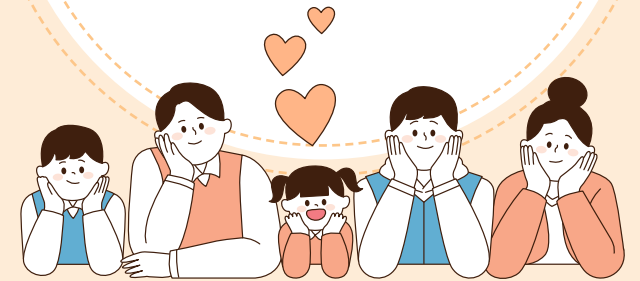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 02-3433-0757
www.broso.or.kr

장애아가족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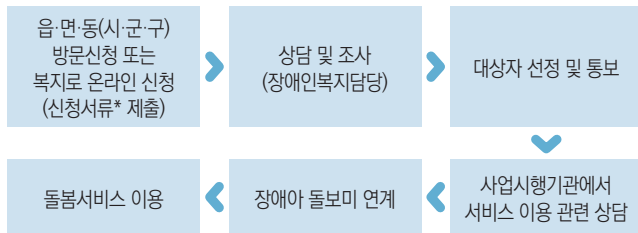
돌봄서비스

-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1,080시간 이내	연 1,080시간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2,14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4,850원 (40%)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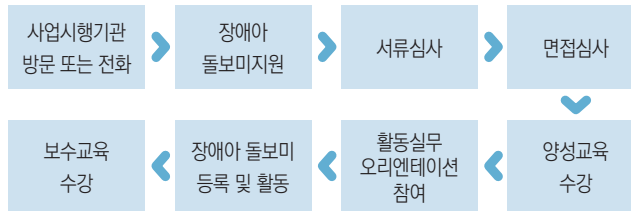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 단,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할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 **이용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기간** 연중 신청
- **이용절차**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장애아 돌보미 양성

-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활동신청** 거주지 해당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 **활동절차**



- **양성교육 과정**
 - **교육시간** : 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
 - *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 양성교육 감면 기준 >

교육시간	우대자 자격기준	비고
총 20시간 (이론 10시간 + 실습 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 아이돌보미 경력자 (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필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 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교육내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다양한 장애 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 *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주요내용**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비용**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 **이용신청**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 **이용절차**

